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2019. 10.

감 사 실

서울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추진근거

-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8호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2019.10.7.)

주요내용

-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징계 감경 금지(제31조2항)
 -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마련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제31조제3항,4항)
 - 임직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수행 시 비위 정도 및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파면’하도록 징계기준 마련

시행일

-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신구조문대조표 참조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2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1조(징계) ① ----- -----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p> <p>② 원장은 제21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p> <p>③ 원장은 임직원이 제29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p> <p>④ 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